##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565

발의연월일: 2024. 7. 10.

발 의 자:황 희·이용선·어기구

한민수 · 김태년 · 이연희

진선미・한정애・조 국

이훈기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 큰 평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여 원만한 사업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 재건축후 예외적으로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1+1 입주권을 부여함.

해당 입주권에 따라 공급받는 주택 중 1주택은 60제곱미터 이하로 규모가 제한되며, 3년간 전매가 금지되어 있음. 그러나 국민주택규모가 85제곱미터라는 점을 감안할 때,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종전의부동산에 비해 협소한 크기로 오히려 정책 참여 유인을 낮추고, 재건축으로 인한 삶의질 개선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1+1 입주권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최소 기준을 국민주택규모로 확장하여, 정책 참여자의 실수혜 폭을 넓히고 삶의질 강화라

는 재건축의 본 취지를 살리고자 함(안 제76조제1항제7호).

법률 제 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1항제7호라목 본문 및 단서 중 "60제곱미터"를 각각 "85제곱미터"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1항제7목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6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제76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①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	①
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7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방법	
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	
다.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라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	
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	
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	
전용면적을 <u>60제곱미터</u> 이	<u>8</u> 5제곱미터
하로 한다. 다만, <u>60제곱미</u>	<u>8</u> 5제곱미
<u>터</u>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	터
은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	
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	
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증여나 그 밖	
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	
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마. (생 략)	마.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